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사 건 2023-20000 영업정지 취소청구  
청 구 인  
피 청 구 인  
심 판 청 구 일 2023. 11. 1.

##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11. 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소재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2023. 6. 13.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3. 11.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으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전액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건비를 줄이고자 서빙과 조리, 재료손질과 설거지 등 모든 일을 혼자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류를 판매하는 업종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따르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항상 주의하고 있고, 이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출입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도 게시해 두었는데, 사건 당일, 건장하고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성숙한 외모의 손님들이 들어왔고 청구인 혼자 주방 일과 홀 서빙을 모두 담당하는 바쁜 상황이라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매출 급감 및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점, 아픈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금액은 총 46,400원이고 이 중 주류판매는 참이슬 1병(5,000원), 생맥주 500cc(4,5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도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은 있겠으나, 행정기관의 법률 적용 및 집행은 법에 따라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법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제92조, 별표 23

####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수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시작일자는 2022. 10. 5.이고, 영업장 면적은 114.4㎡(조리장 46.2㎡, 객석 68.2㎡)이며, 업종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나. ○○경찰서의 2023. 7. 13.자 수사결과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 ○○○는 2023. 6. 13. 23:30경 ○○시 ‘○○○○○○○’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인이 아닌 참고인 ○○○(남, 17세)과 ○○○(여, 17세)이 방문하였는데,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이 둘을 출입시켜 생맥주 500cc 1개와 소주 1병, 안주 등 총 46,4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 ○ 수사 결과

-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 예정

다. 피청구인은 2023.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8. 4. 피청구인에게 부채증명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본인 및 가족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의 감경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검찰청은 2023. 9. 6. 청구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직전인 2022. 8. 20. ○○○○에서 8,300만원 가계일반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이후인 2022. 12. 2. ○○은행에서 대출과목 ‘○○시/이차보전/소상공인(2년일시)’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2. 10. 12. 유한회사 ○○주류상사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보증금액은 2,000만원으로, 월세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23년 4월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 합계는 69만4,090원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23. 6. 20.자 청구인의 진단서(의료기관 명칭: ○○○○정신건강

강의학과)에는 '○○○은 우울, 무기력, 불안, 충동성, 공황발작 등의 증상을 주소로 금 일 본원에 첫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음. 추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 기재되어 있다.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75조제1항제13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23-Ⅰ.일반기준-15.-마.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23-Ⅱ.개별기준-3.식품접객업-11.-

라.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로 되어 있다.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따르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항상 주의하고 출입문에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미성년자 출입금지)을 게시해 놓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으며,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들의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향후 2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의 수입상실로 월세, 관리비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7일)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 4. 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4. 4.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